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80

발의연월일: 2020. 11. 12.

발 의 자:이원택・김승원・맹성규

송재호・오영환・한병도

이성만 · 전재수 · 김종민

장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 선원들이 여권 등을 압수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상 재해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은 통상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이 되는데, 임금 수준이 낮은 일부 선종의 경우에는 상병보상액이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그 밖에 선원관리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임금 체불 등 선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고, 현행법상 실정에 맞지 않는 수장규 정, 선원수첩 등 추가적인 개정소요도 존재함.

이에, 선박소유주의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재해선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상병보상을 최소한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선상 근무 중 사망한 선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해 사망 선원에 대한 수장 대신 시신

인도의무를 반영함. 또한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국적선원들의 현황 파악 및 유사시 비상연락망 구축을 위해 해외취업선원 신고제 도입, 그 밖에 임금채권 보장보험 관리를 위한 행정조사 권한 반영, 선원수첩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 제한사유 중수사 중인 자 삭제, 승무정원 변동 시 재발급 의무 부과, 여성 선원에게 생리휴가 이용 선택권 부여, 선원관리사업자의 선원관리업무에 대한 준수의무 부과 및 선원관리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선원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더불어 안전한 운항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7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0조의2, 제56조의2, 제65조, 제96조 및 제112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시신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이 시신의 반입을 금지할 경우 시신을 반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적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하여 외국적선박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선원관리사업자가 해당 선원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 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6조의2(임금채권 보장보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의 건전한 운영 및 임금체불 피해 선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장기금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기금운영자, 선 박소유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 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승무정원 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93조 중 "여성선원에게"를 "여성선원이 청구하면"으로 한다. 제9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 지급액이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의 지급액으로 한다.
- 제112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원관리업무를 수 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선원 인력관리 수탁 계약서에 따라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사업자가 지급받아 선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비 및 유급휴가급 등의 지급 시기 및 금액 준수
 - 2.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 금지
 -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제8항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선원관리사업자가 제 8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64조제6호 중 "수장하였을"을 "시신 인도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로 한다.

제170조제12호 중 "제96조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96조를"로 한다. 제173조제1항제9호 중 "제65조제1항"을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으

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74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112조제8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한 선원관리사업자
- 4의3. 제112조제10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원관리사업자
- 제179조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원 혹은 선박관리사업자
 - 6의3.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 과한 선박소유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및 제179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제17조(수장) 선장은 항해 중 선 제17조(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 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 바에 따라 수장(水葬)할 수 있 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 만으로 이동하여 시신이 유가족 다.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이 시신의 반입을 금지할 경우 시 신을 반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제3조 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외국적 선박에 승무하 는 선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 112조제2항에 따른 선원관리사 업자를 통해 외국적선박에 취업 하는 경우에는 선원관리사업자 가 해당 선원에 대한 정보를 신 고하여야 한다.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①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① 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원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람으로 통보된 사람
- ② (생략)

<신 설>

<신 설>

1.·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 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 는 아니 된다.

제56조의2(임금채권 보장보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의 건전한 운영 및 임금체불 피해 선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 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장기금 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기금 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의 사업 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

제65조(승무정원) ① (생 략)

<신 설>

② 해양항만관청은 <u>제1항</u>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정원 증서를

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승무정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 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③ ----- <u>제1항 및 제2</u> 항-----
- _____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93조(생리휴식) 선박소유자는 제93조(생리휴식) ------여성선원에게 월 1일의 생리휴 여성선원이 청구하면 -----식을 주어야 한다.

제96조(상병보상) ① · ② (생 략) 제96조(상병보상) ① · ② (현행과

<신 설>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① ~ ⑦ |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① ~ ⑦ (생 략)

<신 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병 보상 지급액이 선원 최저임금액 보다 적으면, 선원 최저임금액 을 상병보상의 지급액으로 한 다.

(현행과 같음)

- ⑧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의 권 익보호를 위하여 선원관리업무 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선원 인력관리 수탁 계약서 에 따라 선주로부터 선원관리 사업자가 지급받아 선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비 및 유급휴가급 등 의 지급 시기 및 금액 준수
- 2.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 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

<신 설>

<신 설>

- 제164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5. (생 략)
 - 6. 제17조를 위반하여 <u>수장하였</u> 을 때

7. ~ 10. (생 략)

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제170조(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금지

-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 사업자가 제8항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자, 그 밖 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서류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선원관리사업자 가 제8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	1	6	1=	亡	(닽	! -	싁)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1. ~ 5. (현행과 같음)
- 6. ----- 시신 인도 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7. ~ 10. (현행과 같음)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11. (생략)
- 12. 제96조제1항 또는 제2항을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 13. ~ 17. (생략)
- 제173조(벌칙) ① 선박소유자, 유 지기구제보험사업자등 또는 재해 보험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8. (생 략)
 - 9. <u>제65조제1항</u>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u>제3항</u>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때
 - 10. ~ 18. (생략)
 - ② (생략)
- 제1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기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4.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u>제96조를</u>
13. ~ 17. (현행과 같음)
제173조(벌칙) ①
 1 0 (원웨기 기호)
1. ~ 8. (현행과 같음)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
<u>제</u> 4항
 10. ~ 18. (현행과 같음)
10. ~ 10. (연행과 실금) ② (현행과 같음)
제174조(벌칙)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5. (생략)

제179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신 설>

7. ~ 16. (생략)

③ • ④ (생 략)

4의2. 제112조제8항을 위반하여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한선원관리사업자

4의3. 제112조제10항에 따른 해 양수산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원관리사 업자

5. (현행과 같음)

제17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 1. ~ 6. (현행과 같음)
-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선원 혹은 선박관리사업자
- 6의3.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한 선박소유자
- 7. ~ 16.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